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0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근거 명시(안 제1조)
- 나.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의 명확성 확보
- 다. 조문상 용어·표기 오류 정비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일부개정안)

5.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 기간: 2026. 5. 13.~2026. 6. 2.(20일간)
-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에 따라 하남시보건소”를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하남시 보건소”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밖의”를 “밖에”로, “따른 소정의”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비”를 “실비(實費)”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시장”으로, “자는”을 “자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로,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를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사기관에”를 “수사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의한”을 각각 “따

른” 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의
한” 을 “따른” 으로 한다.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
자

제8조 본문 중 “당일 납부하며” 를 “그날 납부하여야 하며”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보건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보건정책과장 서 원 숙
	팀장 직위 · 성명	진료약무팀장 김 윤 아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강 모 래 (031-790-5914)

[별표 2]

수수료(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기 준	수수료
1. 각종 증명	가. 건강진단서	1통당	2,000원
	나. 결핵확인서	1통당	2,000원
	다. 건강진단결과서	1통당	3,000원
	라. 자동차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서	1통당	4,000원
	마.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당	300원
2. 예방접종	가. B형 간염	1회분	해당 물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이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장티푸스	1회분	
	다. 유행성 출혈열	1회분	
	라. 기타	1회분	

※ 비고

제1호다목의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서를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하남시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하남시 보건소----- -----.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① (생략) 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 ----- -----. ----- ----- ----- ----- ----- ----- ----- -----.
제6조(수수료) ①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제6조(수수료) ① ----- -----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하남시수입증지로 납부하며,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의약품 등의 수수료는 실비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

-----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② -- 밖에 -----

----- 따른 -----
-----.

③ -----

실비(實費)-----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시장-----
----- 자에 대해
서는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수사기관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

4. ~ 8. (생략)

9.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1. (현행과 같음)

2. 수사기관의 -----
--

4. ~ 8. (현행과 같음)

9. -----

가. -----
----- 따
른 -----

나. -----
----- 따른 -----

다. -----

----- 따른 -----

라. -----

----- 따른 -----

마.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 (생략) ③ (생략)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u>당일 납부하며</u>, 납부된 진료비 및 수수료·세입은 다음 날까지 하남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제금액은 월 1회 이상 납입한다.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u>따른</u> 참전유공자 바. ----- ----- <u>따른</u> -----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 ----- <u>그날 납부하여야 하며</u>----- -----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1. 23.]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타법개정]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2023.11.22>